

■ 재활보조기구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조정 현황표

(단위 : 원)

분류	유 형	구 분	기준액 (A)	실제 소요 비용(B)			건강보험 부담금 (B-A)	비고
				소계	재료비	제작비		
팔 의 지	어깨가슴 의지	미관형	930,000	1,157,570	760,000	397,570	227,570	·
		기능형	1,530,000	-	-	-	-	기능형이 없음
	어깨관절 의지	미관형	1,020,000	1,157,570	760,000	397,570	137,570	·
		기능형	1,530,000	-	-	-	-	기능형이 없음
	위팔 의지	미관형	740,000	902,570	505,000	397,570	162,570	·
		기능형	1,530,000	1,785,000	1,412,000	373,000	255,000	반자동의수 지급
	팔꿈치관절 의지	미관형	720,000	603,000	230,000	373,000	-	·
		기능형	1,640,000	1,925,000	1,552,000	373,000	285,000	반자동의수 지급
다 리 의 지	골반 의지	-	2,260,000	3,613,000	2,930,000	683,000	1,353,000	- 산재 부담금: 670,000원
	엉덩이관절 의지	-	2,260,000	3,613,000	2,930,000	683,000	1,353,000	- 산재 부담금: 670,000원
다 리 보 조 기	엉덩 - 무릎 - 발목 - 발 보조기	한쪽	540,000	565,000	188,000	377,000	25,000	·
		양쪽	790,000	1,130,000	376,000	754,000	340,000	·

[※ 기준액(A)은 산재(건보) 수가임]

■ 의결 사항

○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조정 수립하여 적용기로 함(본인부담금 산출 등)

- 건보 등 비산재 장애인은 차액분¹⁾을 본인부담하게 함
- 산재 장애인은 산재수가(기준액)로 지급(청구)함

※ 단, 골반 의지 및 엉덩이 관절의지의 경우 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수가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.

1) [실제소요비용(B: 재료비+제작비) - 기준액(A)]